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33 호 2022. 3. 3.(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9호[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고시] .....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48호[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49호[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50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1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6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57호[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84호[울산광역시 북구 청원심의회 위원 모집 공고] ..... 2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90호[「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2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03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04호[공시송달 공고] ..... 3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07호[2022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예산) 공고] ..... 36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9호

#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고시(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4.29>

노선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km)	자전거도로 너비 (m)	주요 경유지	지정 (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북구-동천자전거길 (동측)	-	전용도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명촌동 794-24	중산동 1200-14	4.0	1.3~1.5	창평천	신규노선지정
북구-동천자전거길 (서측)	-	겸용도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천곡동 25-4	시례동 608-9	4.2	1.3~1.5	상안교	"
송정천자전거길	-	전용도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창평동 1207-14	창평동 1295-8	3.19	1.3~1.5		"
무룡로 R		전용차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구유동 379-2	연암동 70-2	4.0	1.3~1.5	울산농소동 우체국	"
무룡로 L		전용차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연암동 70-2	구유동 379-2	4.2	1.3~1.5	호계천	"

동해안 로R	소(국)3 -277 소(집)2 -650	전용차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어물동 1330-1	산하동 21-6	3. 19	1.3~ 1.5	정자항	"
동해안 로L	중(보)1 -90 소(국)3 -277	전용차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정자동 637-5	어물동 1330-1	2. 83	1.3~ 1.5	정자항	"
천곡길 L	대(보)2 -76	전용차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천곡동 1147	신천동 499-1	0. 82	1.0	천곡교	"
판지1 길L	소(국)1 -8	전용차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구유동 234-5	구유동 648-4	0. 02	1.5	판지어 촌계 수산물 구이단 지	"
무룡로 R		우선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구유동 379-2	연암동 70-2	5. 40	3.0 0~8. 00	울산농 소동 우체국	"
무룡로 L		우선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연암동 70-2	구유동 379-2	5. 40	3.0 0~8. 00	호계천	"
동해안 로R	소(국)3 -277 소(집)2 -650	우선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어물동 1330-1	산하동 21-6	0. 26	7.0 0~8. 00	정자항	"
동해안 로L	중(보)1 -90 소(국)3 -277	우선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정자동 637-5	어물동 1330-1	0. 60	7.0 0~8. 00	정자항	"
용바위 1길R		우선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당사동 522-1	당사동 369-2	0. 78	6.0 0~1 0.00	당사해 양 낙시공 원	"
용바위 1길L		우선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당사동 369-2	당사동 522-1	0. 76	6.0 0~1 0.00	당사해 양 낙시공 원	"
용바위		우선도로	울산광	당사동	당사동	0.	5.0		"

2길R			역시 북구청	332	314	20	0~7. 00		
용바위 2길L		우선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당사동 314	당사동 332	0. 20	5.0 0~7. 00		"
정자길 R	중(집)2 -174	우선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구유동 648-4	정자동 637-27	1. 50	4.0 0~7. 00	정자항	"
정자길 L	중(집)3 -150	우선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정자동 637-5	정자동 183-1	1. 50	4.0 0~7. 00	정자항	"
재전1 길R	소(국)2 -387	우선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구유동 631-1	구유동 626-1	0. 22	4.0 0~6. 00		"
재전1 길L	소(국)2 -387	우선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구유동 627-5	구유동 78-4	0. 22	4.0 0~6. 00		"
구유길 R	소(국)3 -46	우선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구유동 205-1	구유동 627-1	0. 56	4.0 0~6. 00	재전 마을회 관	"
구유길 L	소(국)3 -46	우선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구유동 626-1	구유동 205-1	0. 56	4.0 0~6. 00	재전 마을회 관	"
판지1 길R	소(국)1 -8	우선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구유동 648-4	구유동 206-1	0. 98	4.0 0~7. 00	판지어 촌계 수산물 구이단 지	"
판지1 길L	소(국)1 -8	우선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구유동 234-5	구유동 648-4	0. 96	4.0 0~7. 00	판지어 촌계 수산물 구이단 지	"
호계로 R	중(집)3 -97	겸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창평동 1205-2	호계동 754-12	2. 29	1.5 0~3. 50	울산농 소동 우체국	"
호계로 L	중(집)3 -97	겸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호계동 966-1	창평동 1203-7	0. 81	1.2 0~2. 90	호계천	"

동해안 로R	소(국)3 -277	겸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어물동 1330-1	산하동 21-6	1. 83	1.4 5~2. 50	정자항	"
동해안 로L	중(보)1 -90	겸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정자동 637-5	어물동 1330-1	0. 08	1.4 5~2. 50	정자항	"
화동로 R	중(집)2 -269	겸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화봉동 1446	화봉동 1516-1	0. 52	1.4 0~3. 15	화봉고 등학교	"
화동로 L	중(집)2 -392	겸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화봉동 1505	화봉동 1440-2	0. 50	1.4 0~3. 20	화봉고 등학교	"
활방로 R	중(집)2 -42	겸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효문동 813-8	효문동 813-16	0. 28	2.8 5~3. 45	명촌천	"
활방로 L	중(집)2 -42	겸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효문동 1440-2	효문동 814	0. 28	2.9 5~3. 05	명촌천	"
신천 소공원 로R	중(집)2 -349	겸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신천동 782	신천동 782	0. 14	2.1 0~2. 50	신천엠 코타운	"
신천 소공원 로L	중(집)2 -349	겸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신천동 782	신천동 782	0. 14	1.9 0~2. 00	신천엠 코타운	"
천곡길 L	대(보)2 -76	겸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천곡동 1147	신천동 499-1	1. 27	1.6 0~3. 85	천곡교	"
약수9 길L		겸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중산동 1013-2	중산동 1178-3	0. 47	1.6 5~3. 20	약수천	"
송내14 길R	중(집)2 -71	겸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화봉동 1463-2	화봉동 1471-5	0. 80	1.5 0~1. 55	송정동 행정복 지센터	"
송내14 길L	중(집)2 -71	겸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화봉동 419-1	화봉동 452	0. 76	1.2 5~1. 55	송정초 등학교	"
화동14 길R	중(집)2 -270	겸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화봉동 1460-4	화봉동 1461	0. 08	1.4 5~1. 55	울산에 너지 고등학	"

화동14 길L	중(집)2 -270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화봉동 453	화봉동 453	0. 06	1.5 0~1. 60	교 울산에 너지 고등학 교	"
오토밸 리 복지센 터R	중(집)3 -73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연암동 1126-11	화동봉 889-1	0. 35	2.25	연암중 학교	"
오토밸 리 복지센 터L	중(집)3 -75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화봉동 888-5	연암동 1140-1	0. 32	2.2 5~1. 95	무룡고 등학교	"
통샘1 길R	소(국)2 -460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화봉동 677-2	화봉동 650-1	0. 31	2.4 5~2. 30	화봉중 학교	"
통샘1 길L	소(국)2 -460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화봉동 667-1	화봉동 667-2	0. 31	2.4 0~2. 50	한우리 아파트	"
약수8 길L	소(국)1 -104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신천동 751	중산동 1178-5	0. 46	1.0 0~3. 20	약수 초등학 교	"
신기3 길R	중(집)2 -126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매곡동 454-6	매곡동 614-4	0. 29	3.35	현대 파크맨 션	"
신기3 길L	중(집)2 -126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매곡동 615-1	매곡동 469	0. 40	1.50	현대 파크맨 션	"
북구청 내부도 로R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연암동 1084-1	연암동 1124-1	0. 19	2.00	북구청	"
북구청 내부도 로L	중(집)3 -94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연암동 1318-4	연암동 998-4	0. 46	2.1 5~2. 30	북구청	"
신천엠 코 타운옆 길L	중(보)3 -439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신천동 783	신천동 594-12	0. 23	1.35	신천 엠코타 운	"
시례천		경용도로	울산광	시례동	시례동	0.	3.4	시례천	"

옆길R			역시 북구청	608-40	671-18	14	0~3. 50		
매곡천 자전거 길R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신천동 312-8	매곡동 337	1. 84	2.3 0~3. 30	매곡 고등학 교	"
매곡천 자전거 길L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매곡동 795-35	신천동 316-5	2. 05	3.0 0~3. 30	매곡도 서관	"
북구- 동천 자전거 길 (동측)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명촌동 794-24	중산동 1200-14	3. 77	1.3 0~3. 20	창평천	"
북구- 동천 자전거 길 (서측)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천곡동 25-4	시례동 608-9	7. 76	1.4 0~5. 20	상안교	"
박상진 5로R	중(집)2 -386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송정동 1155-1	송정동 1158-1	0. 28	3.50	박상진 의사생 가	"
박상진 5로L	중(집)2 -386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송정동 1159-1	송정동 1163-2	0. 27	3.50	박상진 의사생 가	"
박상진 6로R	중(집)2 -387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송정동 1164-5	송정동 1172-6	0. 25	3.50		"
박상진 6로L	중(집)2 -387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송정동 1173-1	송정동 1181-1	0. 25	3.50		"
박상진 8로R	중(집)2 -388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송정동 1206-1	송정동 1199-3	0. 22	3.50		"
박상진 8로L	중(국)3 -290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송정동 484-1	송정동 1159-1	0. 97	3.50		"
매산로 R	중(집)1 -225	경용도로	울산광 역시 북구청	매곡동 634-3	매곡동 865	0. 29	2.90	아이마 음 아동병	"

매산로 L	중(집)1 -225	경용도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매곡동 628	매곡동 625-1	0. 29	2.90	원 월드메 르디앙 월드시 티아파 트	"
매산3 로R	중(집)1 -78	경용도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매곡동 745-14	신천동 43	0. 21	2.35	신천CG V	"
매산3 로L	중(집)1 -78	경용도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신천동 47	신천동 62-4	0. 21	2.35	신천CG V	"
호계4 공원옆 L	중(집)1 -76	경용도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호계동 936-157	호계동 423-1	0. 20	3.00		"
원지제 방길R	소(국)1 -138	경용도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창평동 1232-53	창평동 1292-3	1. 61	1.6 0~2. 30	창평동	"
북구청 내부도 로2R	중(집)3 -94	경용도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연암동 1126-14	연암동 998-4	0. 50	2.1 5~2. 25	북구청	"
북구청 내부도 로2L	중(집)3 -94	경용도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연암동 1004-19	연암동 1121-2	0. 49	2.1 5~2. 25	북구청	"
판지1 길R	소(국)1 -8	경용도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구유동 648-4	구유동 206-1	0. 22	1.5 0~3. 00	판지어 촌계 수산물 구이단 지	"
판지1 길L	소(국)1 -8	경용도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구유동 234-5	구유동 648-4	0. 05	1.50	판지어 촌계 수산물 구이단 지	"

※ 관련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 노선지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북구청 건설과(052-241-7875)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48호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1	58	10	국지 도로	269	대3-39	소2-67	일반 도로	-	'02. 3. 2. 울(북)고10호
폐지	소로	2	322	8	국지 도로	30	소2-13	소2-109	일반 도로	-	'02. 3. 2. 울(북)고10호
폐지	소로	2	323	8	국지 도로	120	중2-125	소2-107	일반 도로	-	'02. 3. 2. 울(북)고10호
폐지	소로	2	324	8	국지 도로	284	중3-97	소1-10	일반 도로	-	'02. 3. 2. 울(북)고10호
폐지	소로	2	383	8	국지 도로	47	중1-90	소1-8	일반 도로	강동 일원	'02. 3. 2. 울(북)고10호

2. 실효일자: 2022. 3. 3.

3. 실효사유: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4. 관련도면: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관련 도서는 울산광역시 복구 도시과(T.052-241-799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49호

#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중산동 1166-4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54	8~13	국지 도로	409	광로3-3	중산동 1166-122	일반 도로		'18. 5. 3. 울(북)고107호
변경	소로	1	54	8~14	국지 도로	409	광로3-3	중산동 1166-122	일반 도로		'18. 5. 3. 울(북)고107호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54	소로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 폭원변경 - (B=8~13m→8~1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회전차로 공간확보에 따른 도로폭원 및 노선일부 변경</li> </ul>

## 2.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145	소공원	소공원	북구 중산동 1166-49번지 일원	570	감 116	454	'20. 12. 24. 울(북)고245호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5	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공원 구역변경 - (A=570m<sup>2</sup>→454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로1-54호선 도로폭원 및 노선일부 변경에 따 른 소공원 구역변경</li> </ul>

## 3. 관계도면: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비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241-7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50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진장20길 27	진장동 518-1	2022. 3. 3.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3. 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6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우선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 대상 추가(안 제5조제3항)

####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8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2) 전화 : 052)241-8983 / 팩스 : 052)241-897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의견서 : 하단 참조

####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3
----------	-----

제출연월일 : 2022. 3. 2.

발 의 자 : 임채오 · 이진복 · 이주언  
정의경 의원(4명)

찬 성 의 원 : 8명

##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우선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 대상 추가(안 제5조제3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
- 나. 조 례 안 : 따로붙임
-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동주택을”을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 모범·우수관리단지의 경우에는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회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 의결하는 때에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주거환경 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공 동주택 관련 주민참여 등 공동 체 활성화 의지가 높은 <u>공동주 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lt;단 서 신설&gt;</u></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공동 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 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우 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 을 ---. 다만, 공동주택 모범· 우수관리단지의 경우에는 선정 된 날부터 5년 이내 1회에 한한 다.</u></p>

## 관계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표창 및 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25조(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22-257 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도시과)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소하천명		이화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66-1번지
	면적	일시: 1,015㎡, 계속: 658㎡
	기간	일시: 2022. 3. 1. ~ 2023. 2. 28. 계속: 2023. 3. 1. ~ 영구
	목적 및 사유	노후교량 철거 및 교량 재설치 공사

열람서류

1. 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284호

# 울산광역시 복구 청원심의회 위원 모집 공고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청원심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2년 2월 2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모집인원 : 5명 이내
2. 모집기간 : 2022. 2. 28.(월) 09:00 ~ 2022. 3. 9.(수) 18:00
3. 자격요건 : 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학계, 법조계 등)
4. 접수방법 : 모집기간 내 신청서(붙임) 작성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방문 및 우편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복구청 주민소통과 민원소통담당 담당자(241-7278)
  - 이메일 : doyj1106@korea.kr
5.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6. 역 할 :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
  -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7. 선정결과 : 2022. 3. 31.(목) 한 개별통지
  - ※ 발표일시는 위원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8. 기 타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관련)
- 구 산하 각종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될 수 없음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주민소통과(☎241-7278)로 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 청원심의회 위원 신청서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직장명(직위)			
연 락 처	휴대폰 :	직장(또는 자택) :	
E-mail	※ 공지사항 및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ul>		
신청사유 및 활동계획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 선정 및 위원회 활동 관련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진, 주소, 직장명(직위), 연락처, E-mail, 최종학력, 주요경력, 체납여부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 기간 : 신청서 제출 시 ~ 임기 만료 시(위촉되지 않은 신청자는 위원회 구성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위원 신청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빈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원심의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290호

#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를 위반하여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에 앞서 「공중위생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에 따른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처분의 제목 : 「공중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 확인
3. 법적근거 : 공중위생법 제3조, 제11조
4. 공시송달 당사자 및 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건물위생관리업	(주)신원이앤씨	조○인	울산광역시 복구 효암로 84-1, 2층(명촌동)	영업장 폐쇄명령

5. 공고(게시)기간 : 2022. 3.2. ~ 2022. 3. 17.(16일간)
6. 청문일시 및 장소 : 2022. 3. 18.(금) 10:00 울산복구청 4층 환경위생과
7. 청문 주재자 : 울산광역시 복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주무관
8. 유의사항

-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치고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52-241-778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2-303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의 행위기준을 정비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 변경 (안 제14조제3항제2호, 제15조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별표 2에서 규정한 가액 범위를 적용, 별표 1, 2 삭제

-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기간에 한하여 두 배(10만원→20만원)로 상향

### 3. 관계법령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 052)241-7144, 팩스번호 : 052)241-7269

#### 6.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별표 1”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표 2”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② (생 략)</p> <p>③ 제15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p>1. (생 략)</p> <p>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u>별표 1</u>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p> <p>3. ~ 8. (생 략)</p> <p>④ ~ ⑥ (생 략)</p>	<p>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p> <p>-----</p> <p>-----</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u>별표 1</u>-----</p> <p>3. ~ 8.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p> <p>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는 <u>별표 2</u>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p> <p>①</p> <p>-----</p> <p>-----</p> <p>-----</p> <p>-----</p> <p>-----</p> <p>-----</p> <p>-----</p> <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p>

② ~ ⑧ (생 략)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1항 관련)

-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 가.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으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 시·행령」 별표

2-----

-----.

②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관계 법령

###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

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 5.>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 1. 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304호

##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운곡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 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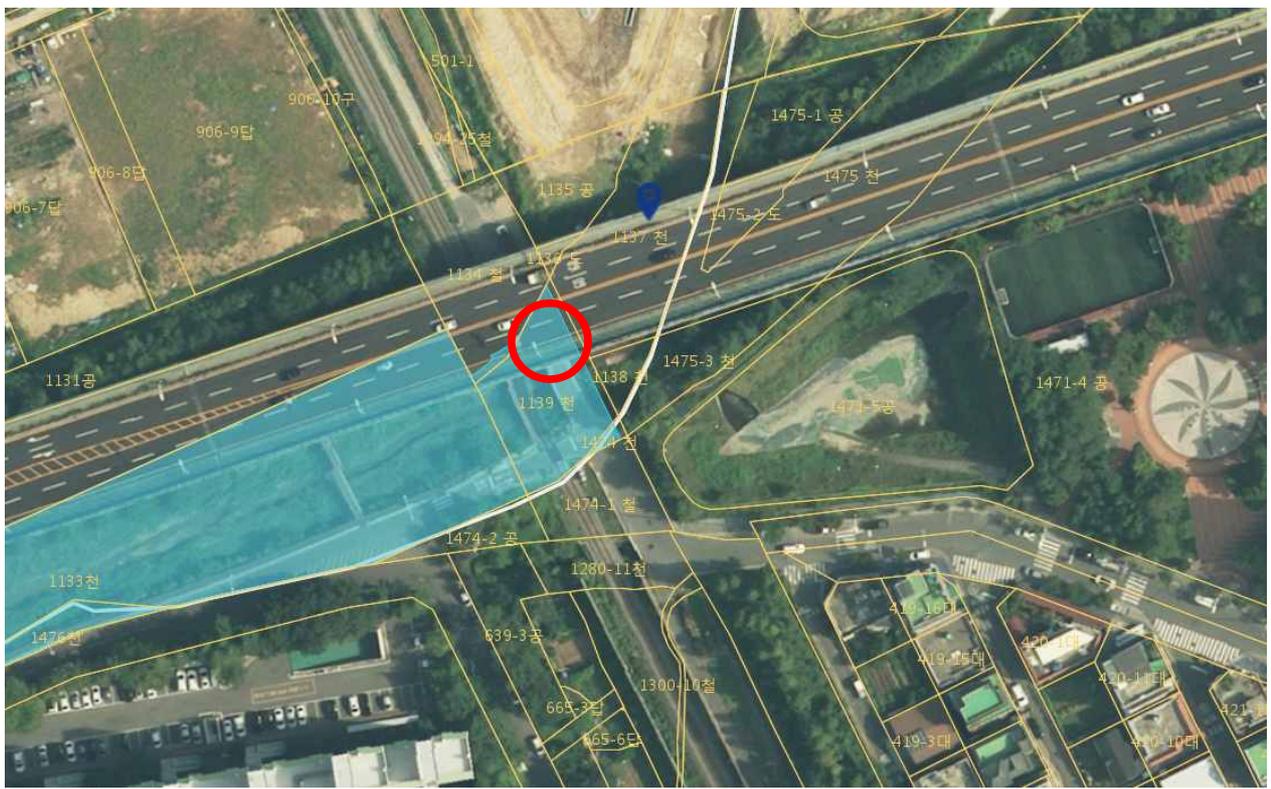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3. 2. ~ 2022. 3. 16.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울산광역시 복구 송정동	1139번지	미상	미상	불법점용	4	

####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2. 3. 18.(금)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붙임</b>	<b>위치도 및 현장사진</b>
-----------	-------------------



위치도(송정동1139번지 일원)



현장사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2-307호

## 2022년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재정공시(예산) 공고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2022년도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재정(예산)공시』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우리 구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477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75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731억원 보다 3254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78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20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3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5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1.01%입니다.

◆ 우리 구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0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예산규모는 작지만,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높으며, 지방채무가 없습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전년도 잉여금과 이월금 등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게 되어 나오는 수치로 우리 구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 > 정보공개 > 재정공시 > [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김태연(052-241-7115)